

서울특별시 금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

1. 제안이유

금천구 육아종합지원센터(사단법인 에듀케어)의 위탁기간(2019. 9. 1. ~ 2022. 8. 31.)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기존 위탁체와 재계약을 통해 사업의 연속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으로 센터 운영을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시설 및 위탁현황

명칭	소재지	시설면적 (㎡)	직원 (명)	위탁체 현황		센터장	비고
				위탁체명	위탁 기간		
금천구육아종합 지원센터(시흥점)	시흥대로73길 70, 지하1층(시흥동)	368	14	사단법인 에듀케어	19. 9. 1. ~ 22. 8. 31. (3년)	윤서연	재계약
금천구육아종합 지원센터(독산점)	두산로70,A동 L층101호(독산동, 현대지식산업센터)	144.47	3				
아이세상놀이터 (독산점)	두산로70,A동 1층103호(독산동, 현대지식산업센터)	180.94	1				
새길과학놀이터	시흥대로12길 82,4층(시흥동)	278.69	3				

나. 재계약 사유

- 1) 기존 수탁체의 업무 전문성 및 사업 추진의 연속성 고려
- 2) 금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성과평가 결과 : **적정**(평가점수 90.5점)

다. 주요 위탁 내용

- 1) 재계약기간 : 2022. 9. 1. ~ 2025. 8. 31.(3년)
- 2) 위탁업무 : 금천구육아종합지원센터 관리·운영
 -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, 가정양육지원사업, 기타사업(홍보, 연구 등)
- 3) 선정방법 : 금천구보육정책위원회 선정심의

3. 선정심의 개요

가. 일 시 : 2022. 6. 23.(목) 14:00

나. 장 소 : 금천구청 9층 기획상황실

다. 심사방법 : 평가표 의거 심의(5개 분야, 9개 항목)

※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계획, 센터장의 전문성,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실적, 운영체의 공신력, 운영체의 재정 능력

라. 선정기준 : 최고·최저 점수를 제외한 합계 평균 70점 이상 득점 시 결정

4. 심의결과

가. 참석위원 : 금천구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총 15명 9명 참석

나. 심의결과 : 재계약 선정 심의 통과(평균 89.2점)

5. 관계법령

가. 영유아보육법 제7조(육아종합지원센터) 및 동법 제51조의2(업무의 위탁)

나.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조례 제20조(설치 및 운영) 및 동법 제22조의7(위탁기간 및 위탁의 취소)

다.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(구의회 동의 및 보고) 및 동법 제9조(계약의 체결 등)

관 련 규 정

■ 영유아보육법

제7조(육아종합지원센터) ① 영유아에게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·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·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제51조의2(업무의 위탁) ①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업무

■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

제20조(설치 및 운영)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육아종합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

② 센터에는 자료실,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하며, 이외에 실내놀이터, 장난감 대여실 등을 둘 수 있다.

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를 「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」(이하 “시행령”이라 한다) 제26조의2에 따라 정부 출연 연구기관,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 개설 대학,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22조7(위탁 기간 및 위탁의 취소) 위탁 기간은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9조제2항에 따르며, 위탁 취소는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16조에 따른다.

■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제4조의3(구의회 동의 및 보고) ① 구청장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(이하 “구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다만,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구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민간위탁사무의 명칭
2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
3. 민간위탁사무 또는 민간위탁시설 내용
4. 민간위탁 기간
5. 수탁자 선정방식
6.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사전 검토 결과

제9조(계약의 체결 등) ① 구청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1.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
2. 위탁기간
3. 위탁대상사무 및 그 내용
4.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5.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
6.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
7. 계약내용 위반 시 조치 사항
8. 예산지원 내용
9.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.

③ 구청장은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사무위탁사실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따른 비공개 대상은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.